

1.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932호, 2022. 9. 5.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5년 9월 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프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프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6. 4. 17. ~ 5.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사우디 아라비아	1. 사다라(Sadara Chemical Company)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 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다우사우디(Dow Saudi Arabia Product Marketing B.V.) 나. 다우싱가포르[Dow Chemical Pacific (Singapore) Private Limited] 다. 한국다우케미칼(주)(Dow Chemical Korea Limited)	43.58
	2. 그 밖의 공급자	